

민간경호경비 현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Systematic Improvement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Private Security Field

이태호* · 박준석**

Lee, Tae Ho · Park Jun Seok

요약

본 논문에서는 시큐리티 민간경호경비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를 위해 민간경호경비의 개념과 특성, 다양한 경비원의 고용형태를 알아보고, 경비업법 상 민간경호경비현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비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민간경호 경비현장과 가장 직접적인 법률인 경비업법 내에서 정의하는 경비업, 집단민원현장의 개념, 경비업의 개정이유, 경비업허가, 배치 및 폐지신고, 경비원 교육의 내용을 연구할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의 기준성의 법적, 절차적 문제점 등을 관할하는 관할 경찰관의 경우 개인의 법적 해석 기준과 실정법에서 정하는 처벌의 해당요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유관기관 협력 체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하여 각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과 이유, 개선방안의 타당성 등을 검토 하고,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이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기관, 학계, 협회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를 연구할 것이다.

Keywords : 시큐리티, 민간경호경비, 경비업법, 집단민원현장, 유관기관

1. 서론

우리 사회는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빈부격차의 심화,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각종 범죄가 날로 증가하며, 범죄의 양상이 다양화, 조직화, 흉포화, 지능화 되고 있다. 또한 급속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불안요인은 더욱 가중되어 안전문제는 이제 정부와 일반시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800년대부터 세계 각 국가들은 국민안전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경찰기구 외에 비국가기구인 민간조직 등이 고객에게 재화를 받고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찰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등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국가 치안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범죄통제 정책에 있어서도 비국가기구를 통한 간접통제, 범죄예방 활동의 주력, 민영화를 통한 책임화 전략 등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2. 본론

본 연구에서 일반경비원이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경우는 배치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집단민원현장에 투입되는 경비원을 허가관청인 경찰청에서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원에 의한 폭력사태와 도주를 방지하고, 경찰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발생한 쟁의행위, 민원과 다툼이 생기는 경우 즉각적인 민간경비원의 배치와 보호가 불가능한 절차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경비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이 경우 일반적인 배치신고에 따라 경비원 배치 전까지 신고를 실시하고, 해당 경비업무가 종료되는 시점에 배치폐지 신고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일반적인 배치신고를 통해 허가를 받고 배치된 경비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사건이 발생하여 집단민원현장으로 전환될 경우 앞서 나타난 사례와 같이 48시간 이전에 신고되지 않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즉각적으로 배치할 수 없고, 이미 배치된 경비원의 경우 배치신고의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배치폐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에 경비원의 투입이 불가능하여 직접고용 또는 일용직 경비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경비업법 상 집단민원현장의 도입 후 나타나는 다양한 민간경비현장 상황에 따른 예외적 사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장상황에 따라 민간경호경비 현장에서 의 현실적 조건이 곧 업무에 비 효율적 효과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

* 평생회원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박사과정 taeho72028@naver.com

** 공조자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pjsart@naver.com

을 놓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 각 분야에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서 제도적개선 방안에 방향을 연구하였다.

3. 결론

시큐리티 민간경호경비 현장에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많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고 나라마다 각양각색이나 대체적으로는 경찰의 기본기능인 질서유지와 법집행 기능 중 질서유지, 즉 사전적·예방적 기능은 민간부문에 이양시키고, 법집행 기능, 즉 사후적·진압적 기능은 경찰이 전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부 대형경비 업체를 제외하고 상당수의 경비업체가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일부 경비업체는 각종 이권과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있으며 일부 경비원에 의한 내부적 범죄도 발생 하고 있는 현실에서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법적·제도적 문제점과 손해배상 문제, 업체의 경쟁력에 관한 문제, 인력관리상의 문제, 경찰과의 상호 협력상의 문제 등으로 파악하였고, 경호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전문성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경비업무에 대한 낮은 인식, 낮은 품질과 전문성, 교육의 문제점, 임금, 업체와 주무관청의 협력 미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제시 보다는 연구자의 주장 또는 선행연구의 내용만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또는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도출이 필요함에 따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체계화하고, 시스템화하여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매우 필요하다. 이처럼 정당한 민간경비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규제와 절차로 인해 경비업법의 목적인 경비업의 체계와 발전을 이루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의 올바른 입법취지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현장의 현실적 문제해결을 위한 경비제도 개선방안을 위해 연구를 실시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남주(2016), 민간경비업무에서 집단민원현장의 대응실태 및 개선방안, 용인대학교 대학원 경호학 석사학위논문
백승민·박동규(2021), 집단민원현장에서의 민간경비운영 개선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20권 1호
Green(1981), Introduction to Security, Boston, Butterworth-Heinemann, p.25
Kakalik & Wildhorn(1972), The Private Police : The Context of Growth, Crane, Russak and Company Inc, p.3.
Flavel(1973), Research into Private Security, Second Bristol Seminar on the Sociology of the Police, p.111.